#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86

발의연월일: 2024. 6. 14.

발 의 자: 강선우·김남희·김 윤

남인순 • 박주민 • 박희승

백혜련 • 서미화 • 서영석

소병훈 • 이개호 • 이수진

장종태 • 전진숙 의원

(14위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, 그 대상을 취약계층 아동으로 제 한하고 있음.

그런데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에 따른 자산 형성지원사업을 기존의 선별적 복지형태에서 나아가 모든 아동을 대 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 현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사업으로는 '아동수 당'이 있겠으나, 대상 연령이 8세 이하이며 정부가 지원한 금액을 매 달 보호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바, 아동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는 도움 을 주지 못하는 실정임.

이에 현행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정부가 취약계층뿐만 아니

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확대함.

이로 인해 모든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의 자산 형성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42조 등).

법률 제 호

##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1항제2호 중 "지원(이하 "자산형성지원"이라 한다)"을 "지원"으로 한다.

제42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절의2 자산형성지원

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42조(자산형성지원사업) ① 정부는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아동의 계좌에 적립하는 사업(이하 "자산형성지원사업"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호자는 일정 금액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.
  - 1.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
  - 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

- 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정의 아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
- 4. 그 밖에 가족을 돌보는 아동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 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아동
- ③ 금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와 보호자의 적립금만이 제1항에 따른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의료비 등 중도 인출이 필 요한 긴급한 사유 외에는 아동이 18세가 되기 전에 인출될 수 없다.
- ⑤ 제1항에 따른 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학자금, 직업교육·훈련비, 주거비, 의료비, 창업자금 등 아동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 어야 한다.
- ⑥ 적립 금액, 지원의 방법·절차, 중도 인출 사유, 적립금 사용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3조제2항제1호 중 "자산형성지원사업"을 "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가 적립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38조(자립지원) ① ---제38조(자립지원)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 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 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 1. · 1의2. (생략) 1. · 1의2. (현행과 같음) 2.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(이하 "자산형 -----기원 성지원"이라 한다) 3. ~ 5. (생략) 3. ~ 5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생 략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2절의2 자산형성지원 제42조(자산형성지원사업) ① 국 제42조(자산형성지원사업) ① 정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부는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· 발전 하기 위하여 아동이 18세가 될 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 때까지 매월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업을 실시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해당 아동의 계좌에 적립하는 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 사업(이하 "자산형성지원사업" 와 해당 아동의 선정ㆍ관리 등 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이 경우 보호자는 일정 금액을 령으로 정한다.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 정부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적 립할 수 있다.
- 1.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조치중인 아동
- 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중인 아동
- 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 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정 의 아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
- 4. 그 밖에 가족을 돌보는 아동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아동
- ③ 금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정부와 보호자의 적립 금만이 제1항에 따른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의료비 등 중도 인출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 외에

제43조(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제43조(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) ① (생략)

-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 와 같다.
- 1.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아동 1.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의 관리
- 2. ~ 5. (생략)
- ③ (생략)

는 아동이 18세가 되기 전에 인출될 수 없다.

- ⑤ 제1항에 따른 계좌에 적립 된 금액은 학자금, 직업교육・ 훈련비, 주거비, 의료비, 창업자 금 등 아동의 자립을 위한 용 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.
- ⑥ 적립 금액, 지원의 방법 절 차, 중도 인출 사유, 적립금 사 용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업무) ① (현행과 같음)

- 른 추가 적립-----
- 2. ~ 5. (현행과 같음)
- ③ (현행과 같음)